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24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조승래・김영진・맹성규
박용갑・박정현・박홍근
안도걸・이정문・이주희
장종태・장철민・정일영
채현일・황정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또는 영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입장권등의 거래가 상당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온라인 판매업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을 “입장권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습 또는 영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그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입장권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2배 이

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의 적발 및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과징금의 산출방법,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장권등을----------.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상습 또는 영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그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 또는 입장권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알선하

	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3(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의 적발 및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그 밖에 과징금의 산출방법, 부과·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